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2계415-125 (전화번호)	전결 규정	조항 전결 사항
처리기간	사 장		
시행일자	결재 1978. 4. 11		
보존년한			
보조 기관	제2부시장	합 법담당관 심사관	조
	도시정비국장		
	도시계획과장		
기안책임자	정 광훈 과. 3 강		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조	발 신	통 계  1978. 4. 11
제목	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		
제1안: 내부결재. <span style="float: right;">고시제 124호</span>			
1. 당시 관내 도봉구 월계동 관내 상곡역 주변 유통			
업무 설비처에 대하여 철도청 시설계획에서 제외되고			
철도 시설 기본 계획에 대한 변경 및 확장 계획이 없는			
본 지역에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거주지역화 되어있어			
면원이 발생된 있으므로 유통업무 설비지를 철도시설 계획에			
맞추어 조정하여 면원 해소시켜 호도시 계획법 제12조 및			
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(77.3.16)의 권한 위임			
사항에 따라 별안과 같이 고시시켜 합니다.			
2. 본 건은 당시 제6차 (78.3.16) 도시 계획			
위원회에서 심의 거결된 사항입니다.			
제2안: 고시안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			
도시 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			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의 변경 결정 및 지정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(72.3.16)의 취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 3.

서울특별시장

○ 변경 결정 및 지정 승인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기정	유통업무설비	도봉구 월계동 424 일대	402.700㎡	상부유통업무설비
변경	"	"	394.965㎡	약 7.735㎡ 축소

변경면적은 도시와 같음 (2면생략) "끝"

제 3 안

수신: 건설부 장관

발신: 시장

제목: 등전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을 변경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: 1.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"끝"

제 4 안

수신: 총무처 장관 (문화공보관)

발신: 시장 (국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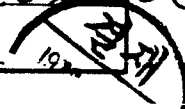
제목: 용관(시)보 게재 의뢰.

1. 다음과 같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: 고시

나. 게재전명: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변경결정및지정승인

다. 근거법칙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



라. 게재 내용: 별첨 사본

첨부: 1. 기사문 사본 2매 (1매) "끝"

제 5 안

수신: 2분구청장

발신: 시장

제목: 등전

1. 귀구 관내 도시 계획 사항이 별첨과 같이  
간시되었기 흥분하니 관계드면 정리하여 도시 계획 업무에  
참고 없기 바라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 여정이나 참인한 것.

첨부: 1. 기사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제 6 안

수신: 종로구 원서동기 환중현

발신: 시장

1. 당시에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한 도시 계획  
시설(유흥업무설비)이 별첨과 같이 간시되었기 흥분  
하니 관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1. 기사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"끝"

제 7 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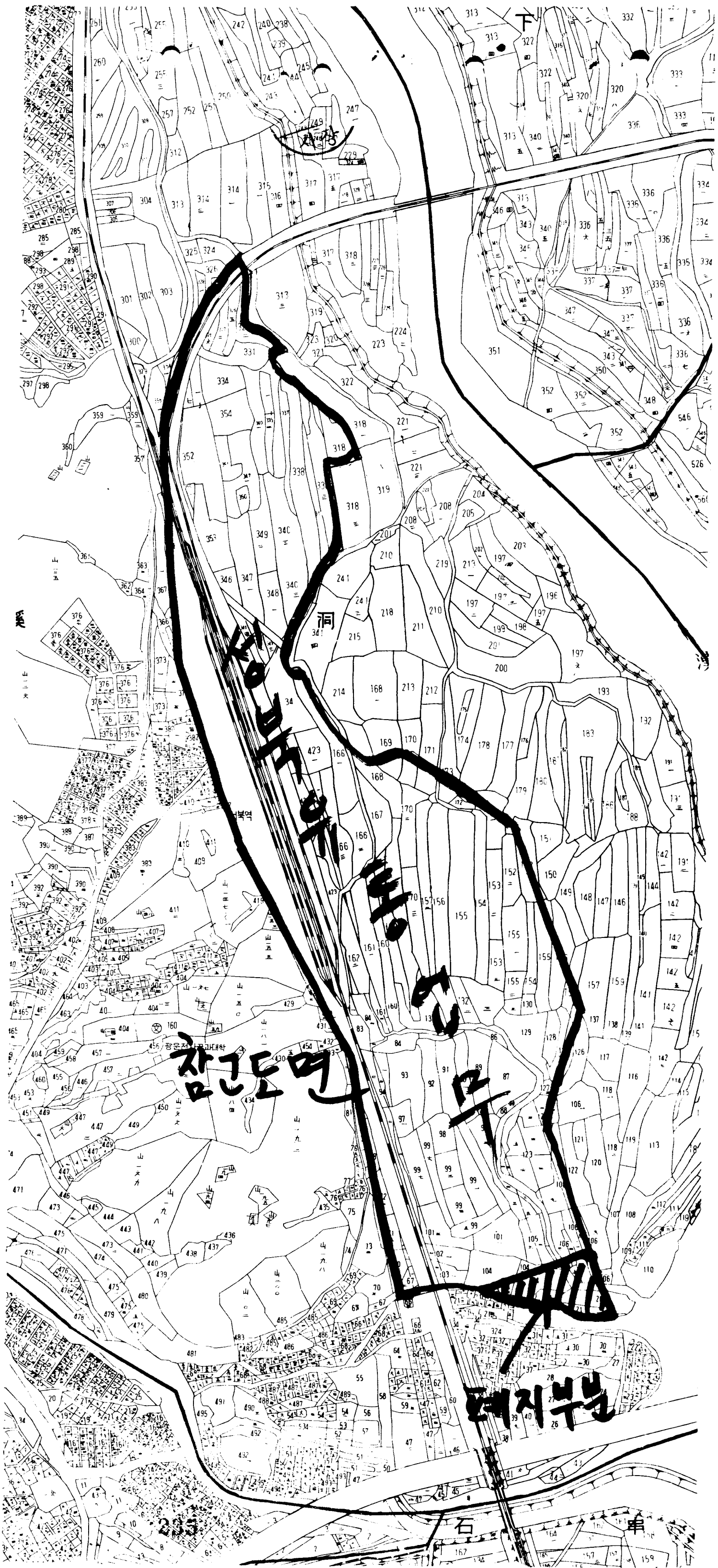
수신: 철도청장 참조: 시설국장

발신: 시장

제목: 등전

1. 당시 관내 도시 계획 시설(유흥업무설비)이 별첨과  
같이 간시되었기 흥분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1. 기사문 사본 및 도면 1부 "끝"



산동면

동

리

리지부

비

역

기 존 변경부분  
(성북유릉업무소까지)

402.700m<sup>2</sup> → 394.965m<sup>2</sup>

철도청시설계획선 (변경지(선))

형질변경부분 양(1,002.826)  
폐지부분  
면적 2,735m<sup>2</sup>

시장